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70호

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

서승필 의원 외 4명

제출연월일

2023. 5. 16.

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70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6.

대표발의자 : 서승필

공동발의자 : 이태모, 조배식,
장진호, 윤금숙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일수를 조정하여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연간 총회의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개정 (안 제2조)

나. 회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·제54조·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개정
(안 제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6조

나. 기타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○ 입법예고 : 2023. 5. 16. ~ 5. 20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90일” 을 “100일” 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,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며 그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” 를 “정례회를 매년 2회, 총 50일 이내로 한다.” 로 한다.

제3조 제1항 단서 중 “상호 연장·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” 를 “변경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승필 의원 외 4명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